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

발 의 자 : 박순이·박교상·김영호
임춘구·한정우·장세만
김도문(7인)

1. 제안 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미시 모범 업소 중 상수도 단독계량기 설치업소에만 지원되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체 모범 업소에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 간 형평성 확보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을 삭제하여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코자 함
(안 제41조제1항제5호)

3. 참고 사항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41조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1.~4. (생략) 5. <u>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며 감면 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함</u> 6. (생략) 8. (생략)	제41조(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)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</u> 6. (현행과 같음) 8. (현행과 같음)	모범업소 간의 형평성 확보

참 고 사 항

식품위생법 제32조제2항

제32조 (위생등급)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소,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8.2.28, 2000.1.12, 2002.8.26, 2005.1.27, 2008.2.29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·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1998.2.28, 2000.1.12, 2005.1.27>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

제43조 (우수업소·모범업소의 지정등)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. <개정 1998.10.19, 2003.8.18>

1.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2.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

②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·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,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.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우수업소·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. <개정 2005.7.28>

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

[illegible]